

## 2025년 「귀농어귀촌인 우수 창업활성화 지원사업」 신청자 모집 재공고

귀농어귀촌인이 안정적으로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컨설팅 및 영농어 초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신규 농어업 육성 및 지역 정착을 지원하고자 「귀농어귀촌인 우수 창업활성화 지원사업」 참여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,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랍니다.

2025. 6. 5.

고 흥 군



### 1 사업개요

- 신청(모집)기간: 2025. 6. 9. ~ 6. 23.
- 사업량(명): 귀농어귀촌인 8명 **※ 추가 모집인원 2명**
- 사업비: 160백만원(도비30%, 군비50%, 자담20%)  
**※ 1인(팀)당 20백만원 이내**
- 지원대상: 신청일 기준 고흥군 전입 5년 이내 귀농어귀촌인
  - 귀농어귀촌인으로 만65세이하(1959. 1. 1.일 이후 출생)인자로 세대주
  - 신규로 창업하고자 하는자 또는 공고일 기준 창업한지 5년 이내인 자
- 지원제외
  - 병역 미필자(군 면제자, 후계농 산업기능요원은 제외)
  - 상근근로자와 개인사업 운영자
  - 정부지원사업에서 동일한 아이템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
- 지원내용: 농어업 등 초기창업비용 지원
  - 지원 세부 내용중 분야별 선택

지 원 분 야	세부내용	지원한도 (천원)
맞춤형 컨설팅	· 현장점검, 기술지도 등	1,000
기술 지원	· 시험분석, IP 지원(특허, 상표, 디자인 출원비용) 등	10,000
맞춤형 제품개발	· 신규제품 제작을 위한 목업, 금형 제작 등	10,000
창업기반 구축	· 단독형 사업장 신축*, 사업장 리모델링**, 농어업 관련 사업에 필요한 시설·장비구입***, 창업관련 기계 장비 구입 등****	20,000
국내외식품 인증	· HACCP, 할라, ISO22000, 코셔 등 인증	10,000
온오프라인 홍보	· 홍보목적 직매장개설, 홈페이지 개설, 온라인 홍보 등	10,000

- \* 사업장 신축의 경우, 단일 건물의 사업전용 공간만 가능
- \*\* 사업장 리모델링은 본인 소유 건물의 사업장만 가능. 단, 임대차 계약기간 5년 이상, 임대인의 상가 수리 승낙서 제출 시 임대 사업장 리모델링 가능
- \*\*\* 농어업 관련 사업에 필요한 시설 장비 구입에서의 농어업의 범위는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 3조(정의) 및 「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」 제 3조(정의)를 따름
- \*\*\*\* 원료 구입비 및 생활가전 등 소모성 성격의 기계·장비(예: TV, 에어컨 등)와 유흥시설·장비 지원은 제외, 차량의 경우는 영업용 등록 차량에 한함.

## 2 신청안내

- 신청서류: 지침 참고
  - 귀농귀촌인 우수 창업활성화 지원사업 신청서(별지 제1호)
  - 귀농어귀촌인 창업계획서(별지 제2호)
  - 주민등록 등본, 초본(주소이력 포함)
  - 가족관계등록부(배우자 포함) 1부.
  - 사업자등록증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  -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, 소득금액증명원
  - 교육이수 실적자료, 기타 증빙자료(견적서 등)
- 서류심사 및 발표일 안내: 2025. 6. 30.(월) 이내 / 개별안내
  - ※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
- 문의사항: 고흥군 인구정책실 귀촌행복팀 (☎061-830-6849)



(별지 제2호 서식)

## 귀농어귀촌 창업계획서

창업동기	(구체적 작성)
사업 내용	1. 사업화 아이템 개요
	2. 아이템의 사업화 가능성 및 성장 가능성
추진 전략	(컨설턴트 활용계획 포함 작성)

(별표 1)

## 귀농어귀촌인 우수 창업활성화 지원사업 신청자 심사기준

\* 시군 형편에 따라 평가항목 변경가능

지역	접수번호	성명			
		평가항목(안)		배점	평점
귀농 인원수 (10점)	농어촌 이주 가족 수 * (10점) 4명 이상, (8점) 3명 이상, (6점) 2명 이상, (4점) 1명 이하		10		
창업의지 및 전문성 (30)	창업 동기 및 창업 의지		15		
	창업 아이템 전문성 및 창직 확산 방안		15		
아이템의 사업화 가능성 (30)	아이템의 사업화 전략		15		
	시장 진입 가능성 및 수요조사 여부		15		
사업계획 적정성 (30)	사업 계획서의 성실성 및 발표력		15		
	예산 사용계획의 적정성		15		
가점	여성창업자		3		
	청년 영농어정착 지원사업 대상자, 농어업, 귀농어귀촌 관련 교육 이수 실적*		3		
합 계				점	
의견					
2025년 월 일					
심사위원:			(서명 또는 인)		

## 《교육 이수 실적 인정 기준》

-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(농정원 및 어촌어항관리공단 포함), 농촌진흥청,산림청,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귀농어·영농어 교육을 30시간 이상 이수한자 단, 귀촌인 교육은 지자체 및 정부, 공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농어촌 지역에서의 창업 또는 일자리 관련 교육을 38시간 이상 이수한자(농어촌재능나눔, 봉사활동, 도농협력 일자리 사업 등 지역 봉사활동 관련 교육도 가능)
  - 교육 수료증 인정기한은 사업 공고일 기준 5년 이내만 가능함
  - 상기 기관(소속 교육원)에서 직접 실시하는 귀농어·영농어 교육의 경우 수료증(인정시간)으로 인정
  - 사이버교육, 지역봉사활동(농어촌재능나눔, 농어촌봉사활동, 농산업 도농협력 일자리사업 등) 총 참여시간의 50% 범위내에서 최대 15시간까지 교육시간으로 인정
    - \* (예시) 사이버교육 30시간 참여한 경우, 총 15시간을 교육이수 시간으로 인정
    - \* 농촌재능나눔: 한국농어촌공사(스마일재능뱅크), 1365, 사회복지자원봉사(vms) 발급서
    - \* 농어촌봉사활동: 읍·면·동사무소 등 행정기관이 발급한 봉사활동 확인서로 인정
    - \* 농산업 도농협력 일자리  
: 시·군 또는 시·군가 위탁한 농산업인력지원센터, 또는 농협중앙회에서 발급한 일자리참여 확인서로 인정